

**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이상회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76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이상희 · 배준영 · 박충권  
한지아 · 엄태영 · 임종득  
최수진 · 고동진 · 김태규  
김종양 · 김승수 · 김성원  
신성범 · 서천호 의원  
(14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상 조합(지역농협, 지역축협, 품목조합)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, 조합원 수,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

령을 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7조제1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##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7조제1항제5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설립인가기 준의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7조(설립인가의 취소 등) ①<br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<br>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br>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<br>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<br>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<br>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와<br>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<br>취소하여야 한다. | 제167조(설립인가의 취소 등) ①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4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<br>치지 못하는 경우 <단서 신<br>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-----<br>-----경우. 다만, 「지<br>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<br>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<br>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<br>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<br>설립인가기준의 조합원 수 규<br>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|
| 6. · 7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·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